

203

P. R 필 요 불필요

자 체 통 제 장부진 (62) 기안처 건설국 하수과 전화번호 근 거 서 류 접 수 일 자
 3-9507 농지간 1143.21-2525(63.7.2)
 63. 7. 2

치 수 담 입 하 수 파 장 건 설 국 장 제 2 부 시 장 시 장

7. 15 7. 15 7. 16 7. 19

관 제 법 제 12 조 시 정 과 장 대 무 국 장 기 획 조 정 과
 판 서 명 공 인 증 무 과 장

기 안 년 월 일 63. 7. 13. 년 월 일 1963. 7. 22 (보 증 한 것)

분 류 서 건 하 전 체 통 제 종 결 정 서 기 장
 기 호 139.

정 수 유 신 발 신
 참 조

제 목 1963. 국유지개간 예정지 결정 고시

62. 8. P. 농림부고시 제 529호 및 63. 2. 26 증양개
 간 심의회 결정으로 당지관하 상등구 농원등 삼정등리개
 입야 47필이 특별개간 예정지로 ~~결정~~ (예정지 신청자 증원
 동산 강릉구식회사 대문 문현수) 인바 있으나 63. 6. 7
 및 63. 6. 19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개간촉진법 시행령
 제 30조 규정 위반으로 증 특별개간 예정지에 대한 결
 정이 취소되어 인바 개간예정지 작리 ~~취소~~ 인바
 개간 예정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개간 촉진법 제 11조
 규정에서 의거 증양개간 심의회의 ~~결정~~ 자문을 정하여야
 되나 본 예정지는 특별개간 예정지로 증양개간 심의회
 의 자문을 정한바 있음으로 ~~결정~~ 여부를 63. 6. 26 농림부

결 63. 7. 20 재

관공에게 질의 ~~결과~~ 63. 7. 2 농림부장관으로 부처
 재차 중앙개간 심의회에 자문을 청할 필요가 없
 다는 시달이 있어 이를 당시 예산 증편상 비
 보로 사업으로 개간 촉진법 제 15조 및 제 6조 규정
 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함이다.

가. 국유지 개간예정지 결정 상황

개간예정지소재지	지구수	면적 정	개간예정지 결정 면적	토지 구	관리청 속
성동구 신원동	5	28.66	35.06	기	속
" 삼성동	2	116.18	11.94	구	왕 실
계	7	154.84	47.0	결	

안 2 "고 시 안"

서울특별시고시 제 473 호

개간촉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 개간 예
 정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.

서기 1963년 7월 22일

서울특별시관 유 래 임

국유지개간예정지 결정 상황

토지소재지	지구	면적	지정	개간예정지 결정	토지용 지	용	사 비	예 정	토지대가	토 지
구	동	지	면	지	지	개	개	보	예	소
성	동	동	동	동	동	동	동	동	동	동
성동구	신원동	65	임	5.88	5.88	전	105.60	비보조	47.520	기속

서울특별시
105

553

신청마감 (63.9.4) 익일부처 10일 내에 의견을
부신하여 당시에 제출하여야 함

유첨. 1. 고시 사무 1부

2. 개간사업 계획서 1부

3. 신청 양식 1부 끝

(참고)

1. 62. 8. 9. 농림부규제 5호 개간예정지 조사

토지의소재지		지목	지번	지적 면적	개간예정 면적	토지이용 의개요	공사비 개산액	예정 보조금	토지대가 예정액	토지 소유자
구	등									
상동	관현	65	임	5.88	5.88	전	105,600	비보국	47,520	기속
"	"	66	"	1.02	1.02	"	20,400	"	7,180	"
"	"	68	"	17.14	17.14	"	232,400	"	104,580	"
"	"	69	"	13.97	13.97	"	96,800	"	43,560	"
"	삼성	45	"	111.98	111.98	"	154,800	"	69,660	구왕철
"	"	61	"	4.20	4.20	"	84,000	"	37,800	"
계				154.19	154.19		694,000		212,300	

2. 63. 2. 26 중앙개간 심의회가결 개간예정지조사

토지의소재지		지목	지번	지적 면적	개간예정 면적	토지이용 의개요	공사비 개산액	예정 보조금	토지대가 예정액	토지 소유자
구	등									
상동	관현	68-1	임	17.14	2.52 (4)	전	50,400	비보국	22,680	기속
"	"	69	"	13.97	9.13 (5)	"	182,600	"	82,170	"
"	"	70	"	0.65	0.65 (0.65)	"	13,000	"	5,850	"
"	"	73	"	3.92	3.92 (3)	"				
"	"	72	"	3.92	3.92 (3)	"				

* () 은 예정지 신청 면적임.